

이 자료는 **즉시**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	2018년 12월 7일(금) (총 3쪽)	담당부서	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
		담당자	윤경천 팀장 (043-880-5821) 김도윤 조사관 (043-880-5827)

##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

- 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-

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,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\*에 접수되고 있다.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‘비포장 식품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\*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,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 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·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한국소비자원(원장 이희숙)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\*\*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, 제과·제빵류 등 ‘비포장 식품’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.

\*\* 스타벅스, 엔제리너스, 이디야커피, 커피빈, 탐앤탐스, 투썸플레이스, 할리스커피(가나다순)

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‘비포장 식품’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,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

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▲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▲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▲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.

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

## < 붙임 >

### 1 일반 현황

#### □ 식품 알레르기의 정의

-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임.

#### □ 관련 기준

##### 가. 포장 식품

-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58호)에 따라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·포장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함.

##### 나. 비포장 식품

- 「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-15호)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를 대상으로 ‘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’를 시행함.
- 제과·제빵류, 아이스크림류, 햄버거, 피자 등의 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그 영업이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이고,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.
- ※ 커피전문점은 ‘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업소’로 분류되지 않아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‘비포장 식품(제과·제빵류 등)’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가 없음.

#### •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1조의2(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)

- ①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·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·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#### •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 제8조(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)

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”란 각각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·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이고,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.

## 2

## 표시 현황 조사 및 시정 조치 결과

-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\*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 (2018. 5. 4. 기준)을 조사한 결과, 제과·제빵류 등 ‘비포장 식품’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로 확인됨.

\* 스타벅스, 엔제리너스, 이디야커피, 커피빈, 탐앤탐스, 투썸플레이스, 할리스커피(가나다순)

-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개 커피전문점과 간담회를 갖고 ‘비포장 식품’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,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

## 3

## 소비자 주의사항

-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한다.

- 식품 구매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,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매장 종업원 등에 확인을 요청한다.

### • 알레르기 유발 식품

- 난류(가금류에 한함)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밀, 고등어, 게, 새우, 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(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<sub>2</sub>로 10mg/kg 이상 함유한 경우)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(굴, 전복, 홍합 포함), 잣

-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둔다.

- 식품 알레르기는 가족 중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력을 확인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알아둔다.

-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다.

- 특정 식품을 섭취하거나 접촉할 때마다 피부 호흡기, 순환기 등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\*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받는다.

\* 두드러기(피부), 설사·구토·복통(위장관), 천식·비염(호흡기), 아나필락시스(전신) 등